

인천광역시서해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hae.go.kr>

선

기관의장

람

제2029호 2026. 9. 21.(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1992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건설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199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8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1992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상업등기법」 및 같은 규칙 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으나, 그간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있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

○ 주요내용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2조제2호)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도로과, 전화 560-4484, 팩스 560-2764, 이메일 ksg282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업등기법」 및 같은 규칙 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으나, 그간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있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

2. 주요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 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가정보육과, 감사실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2. ----- 법 인등기사항증명서----- ----- ----- ----- -----.

관계법령 발췌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199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되는 도서의 재활용 방안으로 개인이나 단체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폐기 또는 제적 자료에 대한 배포 근거 신설(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 전화 032-560-5751, 팩스 032-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되는 도서의 재활용 방안으로 개인이나 단체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기 또는 제적 자료에 대한 배포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도서관의 이용”을 “도서관 운영”으로 한다.

제2장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폐기 또는 제적하여야 할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④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세부 기준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u>도서관의 이용</u> <u><신 설></u>	제2장 <u>도서관 운영</u> <u>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u> <u>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u> <u>위하여 타 도서관 또는 문화시</u> <u>설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u> <u>관할 수 있다.</u> <u>② 자료의 이용가치가 없거나</u> <u>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u> <u>할 수 있다. 다만, 폐기 또는 제</u> <u>적하여야 할 사유를 명기한 목</u> <u>록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u> <u>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u> <u>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u> <u>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u> <u>다.</u> <u>④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u> <u>제적에 관한 세부 기준은 도서</u> <u>관장이 정한다.</u>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